

제195회 영등포구의회
2016년도 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6. 6. 21.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基 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144호로 2016년 6월 2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6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법제처 규제개선 권장에 따라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상인 간 분쟁 발생 시 이를 조정 할 수 있는 협의체(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신설 (안 제7조의2 및 제7조의3, 제7조의 4)

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의견 청취 의무화 (안 제10조제3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별도 예산조치 필요 없음

5. 검토의견

본 개정 조례안은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근거가 이미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조례에 다시 설치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 법제처 규제개선 권장에 따라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상인 간 분쟁 시 이를 조정 할 수 있는 협의체 신설이 필요하여 조례를 개정한다는 집행부의 의견은 정책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측면으로 이해되나, 조례개정 필요성, 상위법령과의 조화 등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먼저,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행정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현행 조례에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와 관련한 규정 자체가 없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에 해당되지 않고,
- 또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제1항에 의하여 설치가 가능함에도 조례에 근거 규정을 별도로 두어야 하는 특별한 당위성도 찾을 수 없으며,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그대로 조례로 정하는 중복 규정으로서 입법체계나 입법경제적으로 불필요한 조례 개정 사례로 보임.

- 아울러, 대규모점포 등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한 ‘영등포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현행 조례에 설치 근거 규정이 없음에도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의5 제1항1)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본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실익은 없어 보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VS 유통분쟁조정위원회 비교표 첨부)
- 종합하여 보면, 규제개선 취지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근거를 조례에 중복하여 신설하려는 데에 있지 않고,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대규모점포와 전통시장 상인 간 분쟁 시 이를 원만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임.
- 따라서, 본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제안이유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붙임〉

- 1)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와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회를 둔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VS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 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근 거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의5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
법정규모	9명 이내 (회장: 부구청장)	11명 이상 15명 이내 (위원장: 위원중에서 호선)
위원임기	2년	2년
위촉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지역 대형유통기업 대표 2명 ○ 해당지역의 중소유통기업 대표 2명 ○ 해당지역의 소비자단체 대표 또는 주민단체 대표 ○ 기타 대·중·소유통 협력업체 납품업체·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대한상공회의소 임원 또는 직원 ○ 소비자단체의 대표 ○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소비자
위원회 처리안건	대규모점포 등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도소매업자 간의 영업활동 분쟁 ○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간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 대규모점포등과 인근지역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 분쟁
현 재 구성여부	2014.1.28. 구성 (회장 1명, 위원 8명)	구성되어 있지 않음

참 고 자 료

1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① 유통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에 각각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2.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3.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다. 소비자단체의 대표

라.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소비자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매업·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등, 영업활동 및 생활환경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7조(분쟁의 조정) ① 제36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특별자치시·시·군·구의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

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특별자치시는 제외한다)·군·구의 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하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의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받은 시·도의 위원회는 그 신청 내용을 시·군·구의 위원회 및 신청인 외의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2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게 된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자료 요청 등)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9조(조정 의 효력) ① 위원회는 제37조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안을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였을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조정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가 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였을 때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40조(조정 의 거부 및 중지) 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訴)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1조(조정절차 등)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의 조정방법, 조정절차, 조정업무의 처리 및 조정비용의 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5조의4(분쟁의 범위) 법 제36조제6항에 따른 생활환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의 개설로 인한 인근지역의 교통 혼잡
2.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한 인근지역의 소음, 진동 및 악취
3.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한 인근지역의 대기오염, 토양오염, 수질오염 및 해양오염
4. 그 밖에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

제16조(유통분쟁조정절차) ①법 제36조에 따른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유통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유통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39조에 따른 조정이 성립되거나 법 제40조에 따른 조정의 거부 또는 중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당사자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의2(분쟁의 조정신청) 법 제37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특별자치시·시·군·구의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처
2. 상대방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처
3. 분쟁의 발단 및 경위
4. 상대방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피해 또는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
5.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
6. 그 밖에 조정이 필요한 사항

제16조의3(조정신청의 통합)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수의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그 다수의 분쟁조정신청을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유통분쟁조정비용의 부담) 법 제37조에 따른 유통분쟁의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한 경우로서 당사자가 그 용역의뢰에 합의한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가 같은 비율로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간 비용분담에 대하여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